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개정이유

-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상임위원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 회의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의안의 회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특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2)
- 심사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3)
-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4)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견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비고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또는 유사 상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행정운영위원회와 해당 의사일정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

1. 의장 또는 부의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선거 및 안건

가. 최초 집회 및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선거. 이 경우 행정운영위원회와

의 협의는 제외한다.

나. 보궐선거

다. 불신임안

라. 사임동의안

2. 임시의장 선거

3. 상임위원장 선거 및 보궐선거

4.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5. 결산검사위원 선임

6. 각종 위원 추천 및 선임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8. 회기 결정 또는 변경

9. 휴회 또는 폐회

10. 군수의 본회의 출석요구

11. 군수의 재의요구

12.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3. 위원회 제출의안. 단,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4. 행정사무조사 발의

15. 결의안 및 건의안. 다만, 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 그 밖에 의장이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21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심사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1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의안의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접수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p>	<p>제21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p>
<p>②의안은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의 동의(動議)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p>	<p>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p>
<p>③의장은 위원회에 보낸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이 더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위원회에 보내서 심사할 수 있다.</p>	<p>③ 의장은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또는 유사 상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p>
<p>④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p>	<p>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p>

위원회에 보내지 않는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다른 위원회에 보내서 심사할 수 있다.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행정운영위원회와 해당 의사일정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

1. 의장 또는 부의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선거 및 안건

가. 최초 집회 및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선거. 이 경우 행정운영위원회와의 협의는 제외한다.

나. 보궐선거

다. 불신임안

라. 사임동의안

2. 임시의장 선거

3. 상임위원장 선거 및 보궐선거

4.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5. 결산검사위원 선임

6. 각종 위원 추천 및 선임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8. 회기 결정 또는 변경

9. 휴회 또는 폐회

10. 군수의 본회의 출석요구

11. 군수의 재의요구

12.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

⑤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다른 위원회에 보내서 심사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쳐서 심사할 수 있다.

⑥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을 거쳐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다시 보내거나 다른 위원회에 보내서 심사할 수 있다.

에 관한 이의신청

13. 위원회 제출의안. 단,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4. 행정사무조사 발의

15. 결의안 및 건의안. 다만, 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 그 밖에 의장이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삭 제>

<삭 제>

<신 설>

제21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심사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